

자동차배출가스 [] 인증 [] 인증생략 신청서
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(시험기간 제외) 10일(인증생략의 경우)				
신청인	① 상호 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대표자	④ 생년월일				
	⑤ 주소 (전화번호 :)					
	⑥ 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)					
자동차	⑦ 자동차 명칭 (형상)	⑧ 자동차 형식 (용도)	⑨ 엔진형식	⑩ 차종	⑪ 사용연료	⑫ 제작사
	⑬ 엔진배기량	⑭ 최대출력	⑮ 변속기	⑯ 차량 총중량	⑰ 공차중량	⑱ 선택사양
	⑲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					⑳ 용도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64조제1항 에 따라
[] 제64조제2항

자동차배출가스 [] 인증
[] 인증생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한국환경공단이사장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첨부서류	<p>1. 인증신청의 경우</p> <p>가.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·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나.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다. 인증에 필요한 세부 계획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라.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1부</p> <p>마.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·수입자 간의 계약서 1부(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</p> <p>바. 제작차배출허용기준(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)에 관한 사항 1부</p> <p>사.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(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p> <p>아. 축전지,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 1부(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,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p> <p>자.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 1부(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p> <p>2. 인증생략신청의 경우</p> <p>가.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/p> <p>나. 제1호마목의 서류 1부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</p>	<p>수수료</p> <p>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</p>
------	--	--

작성방법

- ⑩란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⑬란부터 ⑰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cc, PS/rpm, 단수, kg으로 적습니다.
- ⑱란은 50퍼센트 이상의 선택사양 품목을 적습니다.
- ⑲란은 배출가스 방지장치를 적습니다.
- ⑳란은 시내버스·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⑨란에는 전동기 형식을, ⑪란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를, ⑬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, ⑲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(보증기간)을 적습니다.
-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⑨란에는 전동기 형식을, ⑬란에는 축전기 정격전압 및 용량을, ⑲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(보증기간)을 적습니다.
-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되는 내용만을 적습니다. 다만, 전기·수소전기 건설기계 원동기는 ⑨란에는 전동기 형식을, ⑬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, ⑲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(보증기간)을 적습니다.
- 신청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되,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, 인증생략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.

처리절차

인증생략 및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라목의 서류
(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) 제출시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환경부(교통환경과), 국립환경과학원(교통환경연구소), 한국환경공단